

의안번호	제585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 355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4월 1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5
----------	-----

제출연월일 : 2017년 4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대형·특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등 기구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본부 분장사무 신설 (안 제14조)
 -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 (안 별표2)
 - 제천소방서 관할구역 : 제천, 단양 일원 → 제천시 일원
 - 단양소방서 관할구역 : 단양군 일원 (신설)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29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청주시 관 내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청주시 관 내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충주시 관 내	충주시 일원
충청북도 제천소방서	제천시 관 내	제천시 일원
충청북도 보은소방서	보은군 관 내	보은군 일원
충청북도 옥천소방서	옥천군 관 내	옥천군 일원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영동군 관 내	영동군 일원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증평군 관 내	증평군 일원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진천군 관 내	진천군 일원
충청북도 괴산소방서	괴산군 관 내	괴산군 일원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음성군 관 내	음성군 일원
충청북도 단양소방서	단양군 관 내	단양군 일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소방본부)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제14조(소방본부)-----</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u></p>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